

#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2024. . .  
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1. 수정이유

-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내문 및 사용 제한 알림카드 비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을 제공하고자 함.

##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신설
  - 당 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변경:
    1. 1일 3회 이상 청소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안 제9조제4항 신설

• 신 설:

4.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청소”를 “청소 및 시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  
-----.

<신 설>

4. 시설의 조치 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한 안내문을 비치하고 응급하게 사용이 제한될 경우 알림카드를 비치하여 다음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